

당 헌

2020.03.08. 창당대회 제정

2020.09.05. 제1차 전국당원대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여성의당” 이라 하고, 약칭은 “여성당”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당의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3조(여성 지도력의 원칙) 당의 대표를 비롯한 모든 기구의 장(위원장, 의장 등)과 각급 공직 선거 후보자는 여성으로 한다.

제4조(조직과 운영) ①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광역시·도당(이하 “시·도당”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② 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제2장 당 원

제5조(당원) ①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전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구분 및 당비) ① 당원은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하고,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6개월간 직전 3개월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②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 당원제를 운영한다.

③ 기타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규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4.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4. 당원으로서 성인지감수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5. 상호간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할 의무

③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 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권리당원의 10분의 1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권리

제8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전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기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조 직

제1절 전국당원대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당원대회(이하 “전당대회”라 한다)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전당대회는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당대회의 의사결정은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한다.

④ 기타 전당대회 참여 권리당원과 투표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전당대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을 두며 당규에 따라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②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당대회 구성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회기와 같다.

④ 기타 선출과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권한) ①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당헌의 제정 및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방향 심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결정
- ② 전당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전국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3호의 의결이 있을 경우, 권리당원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소집) ① 정기 전당대회는 1년마다 공동대표가 소집 한다.
- ② 임시 전당대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기타 전당대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운영위원회

-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당의 일상적인 협의와 의결기관이다.
-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전국운영위원은 지역, 연령, 전문성, 계층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중앙당 대표
 2. 시·도당 대표
 3. 중앙당 위원
 4. 시·도당 위원
- ④ 기타 전국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4조(전국운영위원회 의장) ①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은 공동대표가 된다.
- ② 기타 의장의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5조(권한)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 및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사업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승인
 5. 강령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6. 당헌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7. 당헌, 당규의 해석
8. 사고 시·도당 및 사고 의제기구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9. 정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기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의 인준과 소환
10.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11. 주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한 안건의 발의
12. 공동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3.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 제16조(소집) ① 정기 전국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씩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전국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또는 전국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대표

- 제17조(대표) ① 대표는 7인 이내의 공동대표로 구성한다.
 ② 공동대표는 당의 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한다.
 ③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동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사업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 추천
 3.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임면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된 권한
- ⑥ 공동대표는 필요에 따라 시·도당 대표자 및 의제기구 대표자 등 주요 집행책임자를 포함하는 당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기타 당무회의의 구성 및 소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8조(공동대표의 구성 및 선출) ① 공동대표는 전당대회 최소 1개월 전까지 권리당원의 직선으로 선출 한다.
 ② 기타 공동대표의 선출 및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9조(상무위원회) ① 당무전반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상무위원회는 공동대표,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당규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상무위원회는 당의 일상적 관심 사안에 대해 당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

④ 기타 상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사무총국) ① 당의 일상 업무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표단을 보좌하고 사무총국 업무를 총괄
2.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
3.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
4. 당무회의 및 상무위원회 안건 제출과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④ 기타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사업위원회

제21조(사업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사업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전국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사업위원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기타 사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가 정한다.

제4장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구

제23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기타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기위원회는 당원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④ 시·도당기위원회는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⑤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 ④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해당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 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기타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의원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

- ②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구로서 전국운영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③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④ 기타 의원총회의 소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고문) ① 주요 사업과 정책 자문을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 ③ 고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고문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정책연구소

제29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 ④ 기타 정책연구소의 구성과 운영, 직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지역조직

제1절 시·도당

제30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와 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지역기반 당으로서 해당 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기타 시·도당의 직제, 운영 및 의결기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시·도당 위원장 선출) ① 시·도당 대표는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시·도당을 대표한다.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당원대회 최소 1개월 전까지 권리당원의 직선으로 선출 된다.

② 시·도당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시·도당 당원대회) ① 시·도당 당원대회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은 연1회 시·도당 당원대회를 개최한다.

③ 당원대회의 의사결정은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정한다.

④ 기타 당원대회 투표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33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위원회 산하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당원모임

제34조(설치) ① 시·도당 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둔다.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내에 의제별 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당원모임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의제기구

제35조(의제기구) ① 각 의제운동의 형성과 강화 및 당과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공동대표는 의제기구를 둔다.

② 의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우리 당 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의제
2. 그 외에 당규로 정한 세부 요건

③ 기타 의제기구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선거

제36조 (선거대책기구) ① 각급 당직 및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급 당직 및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공동대표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광역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3. 당직 및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③ 기타 선거대책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 (각급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① 각급 당직 및 공직후보자는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현장투표로 선출하고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 기타 각급 당직 및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당직 및 공직선거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① 당직 및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공천관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당직 및 공직선거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자심사위” 라 한다.)를 둔다.

② 후보자심사위는 당직 및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승인 전까지 당직 및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③ 후보자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인사 위원을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기타 후보자심사위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포상과 징계

- 제39조(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동대표가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는 당규로 정하며, 모든 당원의 제명 등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단, 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중앙 당기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40조(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권리당원의 10분의 1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기타 소환의 절차 및 해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재정

- 제41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후원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당비와 광역시·도당 지정후원금 분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⑥ 기타 재정의 관리와 집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42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기타 예산과 결산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중앙당 후원회

- 제43조(지정) ① 공동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44조(당헌개정) 당헌개정안의 발의는 전국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권리당원 10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한다.

제45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조직진로에 관한 안건은 권리당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6조(합당과 해산, 청산) ① 중앙당이 합당,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은 소멸 당시의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입기구가 청산한다.

② 시·도당 또는 당원모임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련서류와 인장 등은 소멸당시 시·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당원모임에서 설치한 수입기구가 청산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당대표 선출 및 임기의 특례) ① 당대표의 선출은 제1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첫 당대표의 선출에 한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당대표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창당준비위원회의 전국운영위원회가 투표하여 창당대회에서 인준한다.

② 창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의 임기는 창당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로 한다.

제3조(당규 제정시까지의 경과조치) ① 이 당헌상 당규사항의 경우 해당부분에 관한 당규를 제정할 때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을 준용한다.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 결정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